

제315회 임시회
2012. 10. 18.(목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행정문화위원회

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2012. 10. 18.(목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- 나. 제출일자 : 2012년 9월 27일
- 다. 회부일자 : 2012년 10월 4일
- 라. 상정일자 : 2012년 10월 10일

(제3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강호동)

가. 제안이유

청원군과 청주시 통합의 일관성 있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청원·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와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고자 통합 추진기구의 명칭을 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으로 변경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명칭변경 (안 제5조)
 - 청주시·청원군통합추진지원단 → 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

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한철우)

금번 개정조례안은 청원군과 청주시 통합의 일관성 있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, 청원·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와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고 통합추진기구의 명칭을 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본문 중 “청주시·청원군통합추진지원단”을 “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실·국·단·본부의 설치)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, 행정국, 보건복지국, 경제통상국, 농정국, 문화관광환경국, 균형건설국, 바이오밸리추진단, <u>청주시·청원군통합추진지원단</u>(이하 “통합추진지원단”이라 한다), 혁신도시관리본부 및 소방본부를 둔다.</p>	<p>제5조(실·국·단·본부의 설치)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, 행정국, 보건복지국, 경제통상국, 농정국, 문화관광환경국, 균형건설국, 바이오밸리추진단, <u>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</u>(이하 “통합추진지원단”이라 한다), 혁신도시관리본부 및 소방본부를 둔다.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③~⑥ (생략)